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년 12월 2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개정안은 서울시가 2017.4월부터 마곡도시개발구역내 하수 재처리수 공급(서남물재생센터)을 계획함에 따라 재처리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재처리수 이용 활성화와 서울시 물순환체계 기반 확보 등을 조기에 유도하고자한다는 측면, 그리고 타 지역과의 요금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재처리수 요금을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재처리수 요금을 1세제곱미터 당 '737원'에서 '590원'으로 수정함.
(안 제26조제3항)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6조제3항 중 “737원”을 “590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(요금의 징수) 《신설》	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(요금의 징수)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 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 미터당 <u>737원</u> 으로 한 다.	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(요금의 징수) ③ ----- ----- ----- <u>590원</u> ----- --.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,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.”를 “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미만은 버림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(재처리수를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2. 급수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<p>② ~ ⑥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6조(요금의 징수)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재처리수 요금(이하 "요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</p> <p>② <u>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,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26조(요금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.</u></p> <p>③ <u>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.</u></p>